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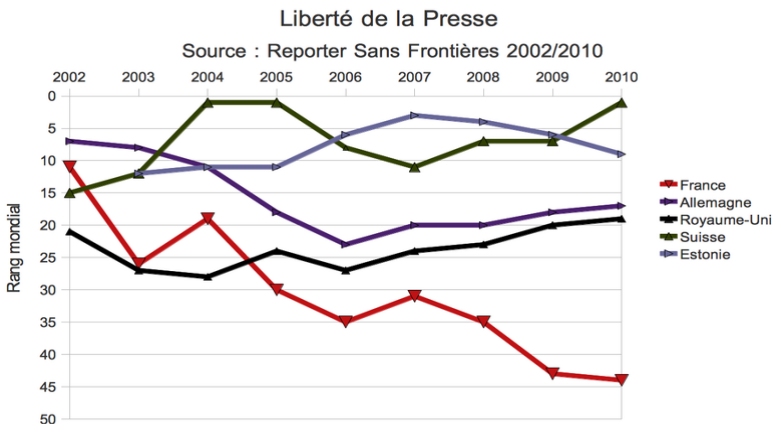
논문

신자유주의 시대 언론 자유의 위기: 프랑스의 경우

이 기 라*

I. 들어가며: 끝나지 않은 언론 자유의 문제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2010년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가 44위를 차지했다. 2002년 첫 조사 때 11위였던 프랑스의 언론자유 순위는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우파가 장악한 가운데 계속 하향 추세였는데,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2007년 31위, 2008년 35위, 2009년 43위, 2010년 44위로 매년 강등해 제3세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¹⁾



* 경희대

1) 작년 순위 발표에서는 38위로 다소 상승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가 매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http://en.rsf.org>

프랑스와 함께 언론자유 불명예 대상에 오른 서유럽 국가는 언론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작년 말까지 총리로 있던 이탈리아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두 나라 모두 수년 간 “미디어 집중이 심화됐고 정치권력은 기자와 기자들의 활동을 경멸적인 언사로 공격했으며, 기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불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집권당인 UMP 의원들의 대선 정치자금 의혹을 폭로한 『르몽드』의 뉴스 취재원을 뒷조사하고,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인터넷신문 『메디아파르』(Mediapart)에 대해 “정치자금 취재를 위해 파시스트 수법을 동원했다”며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한 사실 등이 언론자유 순위를 강등시키는 감점요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비정부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도 프랑스가 2000년대 들어 언론자유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는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서 0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매겨지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2002년 17이었던 프랑스 언론자유지수는 조금씩 나빠져서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2008년에는 22로 세계 40위로 내려앉았고, 2012년 발표에서는 24로 세계 43위까지 추락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견과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그 기준과 신뢰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보다 객관적이라 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할만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더구나 개별 국가의 언론자유 정도에 대해 두 단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제도권 안팎에서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면서 비교적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율도 높은 편이다. 더구나 오랜 시위문화의 발달로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정치문화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되어온 프랑스, 볼테르의 나라 프랑스의 언론자유지수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 우리는 우선 프랑스의 언론 자유와 그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주로 최근 언론 자유의 위기와 관련된 흐름과 그 성격을 프랑스의 신문, 방송,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언론 자유의 위기에 대응하여 어떤 방식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언론 자유와 위배에 관한 법적 규정

근대 이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제11조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²⁾ 또한 1953년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 확장이 바로 언론의 자유이다.

프랑스에서 언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법률은 1881년에 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이다. 이 법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언론 자유의 권리’를 완전히 성문화시킨 것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18세기 말부터 지속된 근대 국가와 언론의 갈등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가 내놓은 최종 해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프랑스에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법률의 제정도 불가능하다.³⁾

2) 제11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3) 박진우,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겨울(2007). 이하 1881년 언론법에서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규정들은 주로 이 논문을 참조했다.

그러나 자유에는 그것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한계가 필요한 법이다. 언론의 상업주의적 성격에 따른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사생활 침해 등 언론이라는 ‘제4의 권력’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사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881년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언론 자유에 관한 원칙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언론자유 of 남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형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반론권과 정정권의 형태로 독자들이 언론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우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원칙’에 기초한다. 언론보도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설사 언론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유의 침해를 막기 위한 확고한 원칙이다. 다음으로, 이 법은 앞부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언적인 총론을 규정한 다음⁵⁾ 그에 위배되는 세부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diffamation)

1881년 언론법 제29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출판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4) 프랑스에서는 언론을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음으로 ‘네 번째 권력’이라고 부른다.

5) 1881년 언론법 제1조는 “인쇄와 배포는 자유롭다”이며, 제2조는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자들의 취재원 비밀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 그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다.” 여기서 사실과 가치 판단의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명예훼손은 엄격히 ‘사실’을 왜곡하는 언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특정 인물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와 같은 형태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중상(injure)

제29조는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중상(injure)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중상에 해당한다. 즉,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표현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하는 경우이다.

3. 모독(offense)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외국의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는 외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모독 금지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 이후 사실상 행사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외국의 수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모독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36조는 2004년에 폐기되었다.

4. 거짓 정보의 전달

제27조에는 일체의 수단을 통한 거짓 정보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4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조항은 거의 집행되고 있지 않다. 언론 현장에서 거짓 정보와 오보를 구별하거나 조작된 정보의 의도를 법적으로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일체의 정보나 이미지, 그리고 현저히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이미지는 ‘전달이 금지된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 게재가 금지된 이미지(사진 및 영상)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포박되어 있는 이미지, 범죄 희생자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 사법 재판 시 청증석에서 촬영한 이미지 등이다.
- 2) 재판 및 수사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식 자료(경찰 수사기록이나 검사 송고장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언론사가 전제 보도하는 것, 둘째, 사법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활동 및 결정 일체에 대한 보도, 셋째, 군, 경찰, 세관 등의 일부 행정조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들이다.

6. 표명이 금지된 의견

- 1) 범죄 및 일탈 선동
- 2) 공공질서나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적 행위에 대한 변호(유럽인권협약과 충돌)
- 3) 반인도적 범죄의 옹호(유럽인권협약 제10조 2항에도 추가 됨), 즉 인종차별 및 인종적 증오에 대한 선동, 타 인종에 대한 모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

언론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대한 사법원칙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대략 연간 45천 건의 언론관련 재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언론관련 소송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론인들이 직업윤리를 엄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중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에 설립된 프랑스 기자노조(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는 스스로 『프랑스 기자들의 직업적 의무 헌장』(*La Charte des devoirs professionnels des journalistes français*)라는 일종의 기자윤리강령을 마련했다. 기자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자체적인 규약을 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13개 조항이었던 것이 1938년 한 차례 개정되면서 한 개 조항이 추가되어 지속되어 오다가, 2011년 3월 재개정되면서 총론과 함께 한 개 조항이 다시 추가되어 총 15개 조항이 되었다.⁶⁾

1881년 언론법과 1918년 기자윤리강령의 전통에 따라, 오늘날 프랑스는 여론과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해서 무언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테랑 대통령의 시신 사진이 유출되어서 『Paris Match』에 실렸을 때도 개재한 잡지와 유출자에게 비난이 쏟아졌고, 다이애나비의 사고 사진도 파파라치들이 열심히 돌렸지만 잡지사들이 거부했다. 언론 자유의 폐단의 하나가 황색 언론이라고 본다면, 자주 문제가 되는 영국에 비해 프랑스는 상당히 압전한 편이다.⁷⁾

하지만 프랑스의 언론자유는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다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6월 인터넷 신문 *Rue89*의 기자인 오귀스탱 칼베르(Augustin Scalbert)가 공영방송 *France3*와의 인터뷰에 앞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비디오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은닉죄’(recel)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언론사 기자가 명예훼손이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은닉죄로

6) 1938년 강령의 원문은 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5, 2011년 개정된 강령의 원문은 <http://www.snj.fr/spip.php?article1032>을 보라.

7) 한 예로 프랑스의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판 타블로이드지들의 비난이다. 그래서 수비수 엠마누엘 뽀띠나 골키퍼 파비앙 바르테즈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방송시작 전에 촬영된 비디오의 공개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중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보기에 애매할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미테랑 대통령이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처벌하기 위해 찾아낸 것이 방송되기 이전에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빼내서 감추었다는 '은닉죄'였던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르코지의 참모인 클로드 게앙(Claude Guéant)과 국내 정보국장 베르나르 스퀘르치니(Bernard Squarcini)는 『메디아파르』(Mediapart)와 『묵인 오리』(Le Canard Enchaîné)가 몰래 감시하고 전화통화를 추적했다는 혐의로 각각 고소한 일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자의 취재원(source)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다. 2010년 1월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서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자들이 그들의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리덤하우스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스테판 문카(Stéphane Munka)와 크리스토프 고티에(Christophe Gautier)라는 두 기자가 억류되어 살인혐의자인 장피에르 트레이이버(Jean-Pierre Treiber)의 사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를 받았다. 당국에 의해 문카의 집과 노트북 컴퓨터가 수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르몽드』가 2010년 9월과 10월에 취재원 보호를 위반한 엘리제궁을 고소한 일도 있었다. 첫 번째 소송은 베탄쿠르-웨르트(Bettencourt-Woerth) 사건에 관한 보도 때문에 국내방첩기구가 신문사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베탄쿠르-웨르트 사건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 에릭 웨르트(Eric Woerth)가 로레알(L'Oréal)의 상속녀 릴리안 베탄쿠르(Liliane Bettencourt)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다. 두 번째 소송은 경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이던 두 기자들의 전화사용내역을 요청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의 언론취재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에게 안전하지만, 몇몇 기자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거리시위를 취재할 때 어려움을 토로한다. 2010년 10월 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시위에서 유료 방송채널 『카날 플러스』(Canal+)의 한 기자는 시위진압경찰대(CRS) 요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당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프랑스 언론의 상황은 자유의 남용을 걱정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자유의 침해가 최근에 다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과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Ⅲ. 신자유주의와 프랑스 언론의 위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래 언론은 권력의 남용에 맞서는 시민들의 수단이었다. 전통적인 삼권,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부패할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룰 수도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국가에서 권력의 부패나 남용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정치권력은 모든 인권침해와 자유의 억압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심각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이 민주적으로 채택되고, 보편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고, 이론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처럼 사법권이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선고를 내리는 일, 미국에서 한 세기 이상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Patriot Act*를 통해 이슬람출신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의회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정부가 사회의 한 부분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언론들은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를 고발하는 것을 중대한 의무라고 여겼다. 그런 언론들은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기자가 실종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언론을 '제4의 권력'(quatrième pouvoir)이라고 불렀다. 언론의 공적인 의미와 용감한 기자들 덕분에 가능한 이 '제4의 권력'은 시민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들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20년 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제4의 권력’은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핵심적인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지구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작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즉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산업을 넘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는지 관찰해본다면,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국면에서 우리는 시장과 국가, 사적 영역과 공공 서비스, 개인과 사회, 이기주의와 연대의식 간의 심각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권력은 초국적인 경제그룹과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들의 무게는 정부나 국가의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매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모이는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주인들’이며, IMF, 세계은행, WTO 등 3대 세계 경제기구의 정책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자본의 지배는 정치권으로의 진입 또는 유착을 넘어 언론장악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대중을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작년 말까지 총리로 있던 이탈리아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⁸⁾ 베를루스코니는 2005년 『포브스』(Forbes)지가 발표한 개인자산순위에서 이탈리아 1위, 세계 25위의 갑부 이면서,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의 소유주이자 유명 축구 구단 AC밀란의 구단주이다. 그는 이탈리아 최대의 출판사 아르놀도 몬다도리 에디토레(Arnoldo Mondadori Editore)와 최고 인기의 뉴스잡지 *Panorama*를 소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최대의 보험 및 은행 그룹 중 하나인 메디올라룸(Mediolarum)을 세웠고, 영화 및 홈비디오 배급(Medusa Film, Penta Film)에도 손을 대고 있다. 그의 동생과 처는 신문사 *Il Giornale*를 소유·경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인 *Il Foglio*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 미디어재벌 베를루스코니

8) 베를루스코니는 1990년대 중반에 우파연정 집권으로 처음 총리가 되어 연정의 붕괴로 7개월 만에 물러났으나, 2001년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동안 이탈리아의 총리를 지내다가 작년 11월 12일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17년간의 정계생활에서 은퇴했다.

의 언론을 통한 정치,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의 언론 장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2004년까지 이탈리아의 방송시장은 공영방송 RAI가 45%,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미디어셋의 3개 민영채널이 44%를 점유하고 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RAI 이사의 3분의 2를 정부 및 여당이 선임하도록 법을 바꾸어 RAI마저 장악함으로써 전체 방송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 장악은 2008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언론 상황은 어떤지 신문, 방송, 인터넷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2000년대 프랑스 신문의 위기와 자본잠식

전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 신문은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인터넷과 무료 일간지 등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으로 전국 일간지들의 판매 부수가 매년 감소했다. 판매 부수가 감소하자 광고 수익도 줄어들었다. 광고 수익이 감소하자 신문의 지면 수와 편집부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문의 콘텐츠는 줄어들었다. 문제는 프랑스 일간지들의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점이다.⁹⁾ 결국 독자 수는 더 줄고 광고 수익은 또다시 감소하였다. 더구나 종이 가격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데다 프랑스의 인쇄비용 역시 유럽 평균보다 30-40%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문 제작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수익성은 하락했다.¹⁰⁾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는 2005년 1월호 커버스토리로 ‘미디어의 위기’(Média en crise)를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프랑스 언론의 위기를 부각시켰다.¹¹⁾ 앞서 기술한 대로 프랑스 신문이 당면한 위기는 신문의 판매부

9) 『르몽드』 한 부의 가격은 1.5유로(약 3천원)이며, 정기구독을 해도 한 달에 40유로(약 8만원)를 내야 한다. 인터넷판 정기구독의 경우 한 달에 15유로(약 3만원)이다.

10) 프랑스 신문의 재정적 위기와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는 송영주, “위기에 처한 프랑스 언론”, 『신문과 방송』 2009년 1월호를 보라.

11) Ignacio Ramonet, “Média en crise”, *Le monde diplomatique*, janvier 2005;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5/01/RAMONET/11796>.

수가 떨어지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로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판매부수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조금씩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소수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서로 연합을 맺으면서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사일과 에어버스 제작사로 유명한 방산재벌인 라가르데르(Lagardère) 그룹은 민영 라디오 방송 *Europe 1*과 *La Province*, *Nice Matin*, *Corse-Press* 등 지방 일간지와 일요신문인 *Journal du Dimanche*, 그리고 *Paris March*, *Elle*, *Parents*, *Première* 등 47개의 잡지를 가지고 있는 거대 출판그룹인 *Hachette*를 소유한 '미디어 제국'이다. 2004년 7월에는 프랑스 우파신문을 대표하는 *Le figaro*가 세계적인 전투기 제작사로 유명한 또 하나의 무기재벌 세르주 다쏘(Serge Dassault)¹²에게 넘어갔다. 다쏘는 중앙 일간지 *Le figaro*뿐만 아니라 주간지 *L'Express*, 월간 경제지 *L'Expansion*, 그리고 *Le Progrès*, *Voix du Nord*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 일간지 등 70여개의 신문과 잡지를 거느리고 있는 소크프레스(Socpresse)의 지분 82%를 장악함으로써 일약 프랑스 제1의 신문재벌로 부상한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는 은행가 에두아르 드 로칠드(Edouard de Rothschild)가 2,000만 유로를 투자하는 대가로 리베라시옹의 지분 37%를 확보해서 대주주가 되었다. 『리베라시옹』은 『르몽드』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좌파 정론지이기 때문에 금융자본과의 만남은 프랑스 지성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무기재벌과 금융자본이 언론계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제1의 신문재벌이 된 세르주 다쏘는 '건전한 생각'(idée saine)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문을 이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서 '건전한 생각'이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유세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그의 '건전한 생각'은 프랑스의 전경련 격인 메데프(Medef)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는 『르피가로』 회장에 취임한 직후 편집국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나는 가능한 한 신문이

12) 매거진 『Forbes』에 따르면, 2011년 그의 재산은 930만 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96번째 부자이다.

기업의 가치를 더 중시하기를 바란다... 이익을 주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이익이나 산업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기업가이면서 전 대통령 자크 시락(Jacques Chirac)과 가까운 가문 출신의 우파 정치인이기도 하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파리 남쪽 근교도시 코르베이-에손느(Corbeil-Essonne)의 시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에 집권당 UMP의 상원의원이 되었고 2011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0년대 이래 프랑스의 정경언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베라시옹』의 경우, 대주주가 된 로첼드는 기존 사장에게 2012년까지 사장직을 보장하고, “편집노선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본가가 돈이 되지 않는 신문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뛰어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장은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비껴가기 위한 유보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그나마 프랑스 최고의 정론지 『르몽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온 『르몽드』는 무기재벌이나 금융자본이 아닌 좌파 컨소시엄에 인수되었다. 르몽드의 정기구독수는 2002년까지 40만 부를 유지했으나, 2003년 38만 부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는 32만 부까지 떨어졌다. 정기구독률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총 부채가 1억 유로가 넘게 되면서 결국 새로운 인수자를 구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르몽드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고 발표하자 여러 곳에서 관심을 표명했다. 첫 번째 후보는 은행 사업가이자 음악잡지 *Les Inrockuptibles* 사장 마티유 피가스(Matieu Pigasse), 인터넷 회사 Free의 설립자인 자비에 니엘(Xavier Niel), 동성애자들을 위한 잡지 *Têtu* 소유자이자 『리베라시옹』 주식을 보유한 사업가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é)를 비롯한 3인의 좌파 성향 컨소시엄이다. 두 번째 후보는 주간 매거진인 『누벨 옵세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 그룹을 소유하고 있으며 프랑스텔레콤(Orange) 지분 20%를 소유한 클로드 페르디엘(Claude Perdriel)이다. 이 외에 스페인의 El País 그룹, 이탈리아의 언론출판그룹 L'Espresso, 스위스의 Ringier 등 해외 기업들도 『르몽드』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

『르몽드』 인수자 선정 과정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입 논란이 있었다. 사르

코지 대통령이 르몽드 사장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거명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는 자신의 친구인 프랑스 텔레콤 사장과 절친한 클로드 페르디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이 후보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르몽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르몽드』는 피가스-니엘-베르제 컨소시엄을 선택했다. 페르디엘은 기자협회의 기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반면, 피가스-니엘-베르제로부터는 편집권의 독립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르몽드』는 프랑스 언론 중에서도 AFP와 함께 기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곳이다. 『르몽드』의 기자협회는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그래서 회사 경영이나 조직 구성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2007년에는 장 클로드 콜롬바니의 경영 대표직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수자 선정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은 기자들 앞에서 르몽드 인수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는 기자협회의 60% 이상의 찬성과 감독위원회(Conseil de surveillance)¹⁴⁾의 과반수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2.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스 방송의 위기

프랑스의 지상파 TV채널은 공영방송사 France Television 소속 채널인 France2, France3, Arte와 채널을 공유하는 France5, 그리고 민영방송 TF1과 M6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는 유료 방송 Canal+와 케이블 방송 TNT, Direct8 등이 있다.

취임 초기부터 방송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6월 공영방송의 광고금지와 공영방송사 사장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방송노조의 파업과 야당들의 반대가 이어졌으나 그해 12월 18일

13) 기자협회에 간부협회, 고용인협회, 직원공동기금, 직원협회 등이 포함된 사원조합의 지분을 합치면 40%에 달한다. 독자협회도 약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4) 르몽드의 감독위원회(Conseil de surveillance)는 내부위원 10명과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두 달에 한번 르몽드의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한다. 20명의 위원 가운데 회사 경영진이 16명이며 기자협회 소속 기자 2명이 참여한다.

개정된 방송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2009년 1월 5일부터 저녁 8시 이후 황금시간대 모든 공영방송의 광고를 금지하고, 미테랑 정부가 도입한 고등방송영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가 가지고 있던 공영방송사 사장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광고금지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까지 전 시간대에 광고가 금지되어야 한다. 명분은 미디어 경쟁력의 강화와 방송의 다양성 확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는 프랑스인은 거의 없다. 이 방송법 개정으로 민영방송 TF1, M6, 케이블 방송 TNT, Direct8 등으로 광고가 몰려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TF1의 사주이자 그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건설재벌 마르탱 부이그¹⁵⁾와 Direct8를 소유한 언론재벌 뱅상 블레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들로 잘 알려져 있다.¹⁶⁾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에 이미 공영 라디오방송사인 *Radio France*의 사장으로 장뤽 이스(Jean-Luc Hees)을 임명했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이후 친정부 보도나 정권 좌우기에 대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장뤽 이스 사장은 2010년 6월 계열 방송사인 『프랑스 엔테르』(*France Inter*)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을 실랄하게 비판해 온 코미디언이자 정치풍자가인 스테판 기용과 디디에 포트르를 해고했다. 『프랑스 엔테르』의 사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인 카를라 부르니의 친구이다. 2010년 8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사 *France Television*의 사장으로 레미 플림랭(Remy Pflimlin)을 임명했는데, 같은 날 플림랭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한 기자를 해임했다.

이처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이 싫어하는 방송인을 퇴출시키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주 받아왔다. 2008년 7월 TF1의 인기 뉴스 앵커인 파트릭 푸아브르 다르보르(Patrick Poivre d'Arvor, PPD)를 축출시켜 큰 논란이 일어났다. TF1 경영진

15) 마르탱 부이그는 TF1의 사주이면서 동시에 그 그룹(LCL, Euro sports France, Euro sports International, TF6, 세리 클럽, TV 브레그, Odysée Histoire, 위취이아 TV, TMC)까지 장악하고 있다.

16)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송관련 언행들에 대해서는 미셸 팽송, 모니크 팽송-샤를로, 장행훈 옮김, 『부자들의 대통령』 (서울: 프리뷰, 2012)를 보라.

은 PPDA에게 갑자기 저녁뉴스 앵커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PPDA가 사르코지가 처음으로 G8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텔레비전 회견을 하면서 “어린애 처럼 흥분되지 않았느냐?”고 무례한 질문을 던진 것이 화근이었다. 그랬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에 당사자가 몹시 불쾌해 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 이래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3. ‘HADOPPI’ 법과 인터넷 규제

인터넷은 1990년대에 새로운 표현 매체로 등장했다.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대안적 표현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무제한적인 복제를 통한 급속한 확산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최근 인터넷도 각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통제 및 처벌의 방법, 범위, 수위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인터넷상의 창조물 유포와 보호 촉진법’(Loi n°2009-669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일명 Hadopi법이 발효되었다. 2009년 5월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수정되어 9월에 다시 통과된 이 법은 동영상 및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우선 그것을 위한 담당기구로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인터넷상의 저작물 유포와 권리보호를 위한 고등기관)를 설치하고,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통한 두 번에 걸친 단계적 경고 이후에도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Hadopi는 불법 다운로드를 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낸다. 해당 인터넷 사용자가 6개월 안에 다시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메일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 등기로 경고우편을 발송한다. 두 번의 단계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 재발이 행해질 경우 1년 이하로 인터넷 사용을 중지시킨다. 또한 이

법은 “합법적인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 상영 후 DVD 출시가 가능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법안이 처음 발의되자, 인터넷 단체, 시민단체, 유럽의회 및 프랑스국회 의원들, 변호사 등 많은 프랑스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들은 주된 비판은 인터넷 접근을 중지시키는 것은 “온라인상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차원에서는 이미 2008년 4월에 “유럽연합 구성원 국가들과 위원회들은 시민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형평성, 효율성, 역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기관인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정보산업 및 자유 국가위원회)과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에서도 세 가지 ‘단계적 대응’이 기존의 여러 법률들(예컨대 “긴급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보장”의 의무)과 충돌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를 표명했다. CNIL의 경우 법적으로 이 법은 사적 생활의 침해(IP 주소의 대중적 수집, 인터넷 접근의 차단)과 재산권의 존중(소유권의 보호)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문제는 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인터넷 해적’들이 추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터넷 저작물의 생산자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웹에서 법을 위반한 네티즌을 찾아서 Hadopi에 고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는 사실상 사법부의 권한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아직 전체 네트워크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 해적’들의 연락처를 얻으려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당 컴퓨터나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엉뚱하게도 서비스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수정된 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법집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기구인 Hadopi가 아니라 법원이 인터넷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사법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사용이 중지된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제기 해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국가안보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법’(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OPPSI 2)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2002년에 만들어진 LOPSI 법을 기초로 수정,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LOPPSI 2라고 불린다. 이 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중 중요한 것은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린이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그래픽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당국은 웹사이트들의 비공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내무부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IP주소들을 필터링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 심각한 범죄(아동성범죄, 살인 등)로 나아가는 다양한 사안들의 경우, 무기 및 마약 거래, 돈세탁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입국, 이동, 체류를 돕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컴퓨터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해당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빼내기 위한 모든 수단(물리적 혹은 원격으로)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은 해당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989년 월드 와이드 웹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들 중 하나인 티머시 존 버너스리(Sir Timothy John Berners-Lee)는 이 법을 포함하여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람들을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법제정의 물결”을 “재앙의 씨앗”이라고 비판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도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점점 더 심해져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결국, 국경 없는 기자회견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Enemies of the internet*)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한국, 호주,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국’(countries under surveillance)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감시국이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접근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인터넷 적대국’보다는 한 단계 높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IV. 나가며: ‘공적 시민의 힘’을 통한 언론감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의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언론자유가 자연적으로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은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은 언론이 그 사명을 다 하도록 언론을 부단히 감시하고 격려해야만 언론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실행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은 시민들의 비판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대표자들과 행정가들을 평가하여 각자의 정치적 판단을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진정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책임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단순하고 좁은 의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독립과 자유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언론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쾌한 사실들을 숨기지 않고 신중함을 가지고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정보제공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핵심적이므로,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정당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래 프랑스 언론자유 위기는 이제 언론이 경계해야 할 권력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자본권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언론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력에 의해서도 장악되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언론의 활동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발행인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의 제안은 경청할 만하다. 그는 새로운 정치·경제·언론 지배연합에 맞서는 공적 시민의 힘이 ‘제5의 권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제5의 권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공모하고 확산시키는 거대

언론 기업들의 막강한 권력을 고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은 상황에 따라 시민들의 대변하기를 멈출 뿐만 아니라, 종종 인민 전체에 반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모네는 시민들이 주요 언론들에게 더 많은 윤리, 진실,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자, 학자, 독자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미디어 감시기구(Observatoire international des média/Media Watch Global)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시절 3-40위권에서 부침을 거듭했다.¹⁷⁾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2008년 47위, 방송법 파동이 있었던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다시 42위로 상승하여 작년에는 44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이 프랑스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를 통해 본 한국 언론자유 위상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위태롭다. 2010년까지 언론 '자유국'(free)이었지만 2011년부터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990년경부터 29-30으로 좋아져 30까지만 분류되는 자유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2011년부터 32점으로 떨어져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순위로 보면 2011년 홍콩과 함께 70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3월에 발표한 2012년 순위에서는 나미비아와 함께 68위를 차지했다.¹⁸⁾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태우 정부시절에 비해서도 지금이 한국의 언론자유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언론자유의 퇴보를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이집트, 온두라스, 헝가리 등과 함께 언론 자유의 상당한 퇴보를 겪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 이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통신수단(위성TV,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콘텐츠의 검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

17) 구체적으로는 2002년 39위,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였다.

18) 2011년은 세계 196개국, 2012년은 19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석했으며, “지난 몇 년간 친북 또는 반정부 성향의 온라인 글이 삭제되었고, 보수 정부가 대형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온 점”을 지적했다.¹⁹⁾

최근 한국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방송사 사장 임명으로 사상 유례 없이 방송 3사 노동조합이 동시에 파업을 하고 있는 동안 제19대 총선을 치러야 했다. 정보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민의를 충분히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창가의 촛불처럼 위태롭다. 우리도 ‘공적 시민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2년 09월 04일
- ▶ 논문 심사일 : 2012년 10월 22일
- ▶ 논문 게재일 : 2012년 11월 17일

19) 권오성,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한겨레』, 2011년 5월 3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079.html

초록

신자유주의 시대 언론 자유의 위기: 프랑스의 경우

이 기 라

최근 프랑스 언론이 위기에 처해있다. 2000년대 이래 프랑스 언론의 상황은 정치권력의 통제와 대기업의 자본잠식 및 독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프랑스 언론 자유와 그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적 규정들을 살펴보고, 최근 언론 자유의 위기와 관련된 흐름과 그 성격을 신문, 방송,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현재 프랑스 언론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언론이 경계해야 할 권력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자본권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정치·경제·언론 지배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거대 언론을 감시하는 ‘공적 시민의 힘’이 필요해 보인다.

□ 주제어 : 프랑스 언론,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위기, 자본잠식

Abstract

The Crisis of Freedom of Pres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A Case Study of France

Lee, Gi-Ra

It is said that the French mass media is in a crisis recently. Since the 2000s, political control over the media, and capital encroachment and monopolisation of the media by large conglomerates have been critical issues in Franc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ess, firstl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rance confining the freedom of press and its limits is reviewed, and secondly, the current situation relating to the crisis of freedom of press in France, focusing on newspaper, television and the Internet is examined in this study. The current crisis of the French mass media clearly shows that it is not only political power, but also economic power of which the mass media must bewar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o cope with the threat of this new alliance of political, economic and media control,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emergence of 'public power of citizens' to watch over the giant media groups is essential.

□ Key words : The French Mass Media,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s, Crisis of the Press, Capital Encroachment

참고 문헌

- 김세은, 이상길. 2008. “서유럽 방송의 공정성 원칙과 규제: ‘불편부당성’, ‘다원주의와 정직성’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방송연구』 제67호.
- 미셸 팽송, 샤를로, 모니크 팽송. 장행훈 옮김, 2012. 『부자들의 대통령』 서울: 프리뷰.
- 박진우. 2007.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언론중재』.
- 박태순. 2009. “프랑스 언론의 위기와 정책적 대응.” 서울: 한국언론학회.
- 송영주. 2009. “위기에 처한 프랑스 언론.” 『신문과 방송』.
- Ignacio Ramonet. 2003. “Le cinquième pouvoir.” *Le monde diplomatique*.
- _____. 2005. “Média en cris.” *Le monde diplomatique*.
- Dilhac, Marc-Antoine. “Il faut défendre la liberté de la presse” *Le Monde*, 17 July 2010
- 국경없는기자회 <http://en.rsf.org>
- 프리덤하우스 <http://www.freedomhouse.org>
- 프랑스기자협회 <http://www.snj.fr>